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50 발의연월일: 2021. 2. 23.

발 의 자 : 허 영·조오섭·박영순

조응천・홍기원・문진석

진선미 · 김회재 · 박상혁

강준현 · 양기대 · 송재호

천준호 • 윤준병 • 김진표

윤영덕 · 장경태 · 임호선

김성환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소규모재개발 사업 방식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추진하는 가로 주택정비사업 방식을 규정하면서, 토지 등을 수용·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 표 제111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825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1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1.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35조의2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